

物質特許制度問題

特許廳 提供

1. 定 義

현행 특허법상 발명은 物件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으로 대별되는데 물건의 발명중에도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현행 특허법상 不特許事由임)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物質特許라 하며, 그 예로 單一化合物(예 : DDT)은 물론, 醫藥, 農藥, 高分子化合物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特許法上 특히 관계되는 法規定

현행 特許法 第4條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 (1) 飲食物 또는 嗜好物
- (2) 醫藥 또는 그 造製方法
- (3) 化學物質
- (4) 原子力 變換에 의하여 製造되는 物質
- (5) 化學物質의 用途에 대한 發明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1), (2), (3), (4)항의 제조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다.

3. 物質特許問題의 舉論動機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강화됨에 따라 '81년부터 美·日등을 포함하여 유럽등 先進諸國은 物質特許 許與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의 農藥生産業界를 위시하여 獨逸의 製藥業界등은 막대한 所要經費와 長時間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先進고도기술에 의한 물질개발이 模倣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그 技術의 安定된 移轉은 長期的으로 我國의 경제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들어 당해국의 산업계를 통하여 또는 政府間的 經協次元會談(과학·외무·상공)을 통하여 이에 대한 허여를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하여 오고 있다.

4. 世界各國의 物質特許 動向

세계적으로 특허제도를 運用하고 있는 國家는 114개국이며, 이중 物質特許를 許與하는 國家는 90餘個國이고 수년내에 이를 採用하기 위하여 檢討中이거나 準備中인 國家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위시하여 수개국에 이르고 있다.

예를들어 대만, 스페인등 開途國은 先進기술의 존도 증가 우리와 自國産業保護策의 일환으로 物質特許에 대한 許與를 躊躇하고 있는 實情이다.

※ 主要國의 物質特許 許與년도

1790년 1814년	1949년	1968년	1976년	1978년
미 국 프 랑 스	영 국	덴 마 크 서 독 스 웨 덴 노르웨이	일 본	스 위 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5. 物質特許制度 許與時的 長短點

물질특허제도 채용시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그 특허권의 안정된 보호에 따라 醫藥·農藥·高分子化合物등 精密化學分野에서 先進고

도기술의 移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써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자체技術의 開發 및 投資意欲이 제고될 것으로 豫見되며,

둘째, 현행특허법하에서 物質特許를 不許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기업에서(대부분 비밀리에) 동시에 同一物質에 대하여 製造方法開發研究를 실행하는 重複研究投資가 減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점을 들 수 있고 短點으로는 이 분야의 研究開發을 위한 高級人力 및 研究施設投資가 부족한 현산업계의 기술수준으로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물질특허에 상응하는 製法改良研究(예: 프레지켄탈 제조방법: 구충약)가 萎縮되어 先進技術에 대한 依存性이 커지고 로열티 支出도 현재보다 增加될 것이 豫想되는 점등의 缺點으로 지적할 수 있다.

6. 問題點

物質特許研究開發과 관련하여 先進國技術水準에 未達하는 현 國內技術水準과 외국으로부터의 허여요청이 상충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며, 또한 현행 특허법상 不特許事由에 해당되는 물질특허규정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간의 경제, 산업기술 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정을 살펴본다면,

첫째, 소관부처가 保社·農水產·商工·科技處등으로 分散되어 있고,

둘째, 醫藥·化粧品·食品添加物등은 藥師法,

食品衛生法, 農藥등은 農藥管理法, 爆藥添加物등은 銃砲火藥類團束法, 公共研究所등은 特定研究機關育成法, 技術導入은 外資導入法등의 特別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등 劃一的·重點的으로 제도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발명특허출원 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청의 현실정으로서 는 物質特許의 許與與否를 檢討하기에 앞서 必要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 및 국내산업계의 技術水準과 산업계·관련 공공연구소의 技術開發力등의 實態把握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데다가 企業의 物質特許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7. 對 策

이상에서 서술한 바의 物質特許制度에 관한 檢討를 위해 현재 국내·외에 經濟分野專門機關인 韓國開發研究院에서도 동제도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所管 部處別, 各關聯事業 部門別 實態把握이 어렵기는 하나 특허청에서도 물질특허제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국내 관련 산업계에 대한 認識度의 提高를 위한 弘報活動을 強化시킬 계획으로 있고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도 會員企業을 中心으로 한 關聯產業界의 意見を 最大限으로 收斂하여 制度變化에 따르는 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들 모든 機關의 見解를 綜合的으로 檢討한 結果에 따라 物質特許의 許與與否 및 時期등을 決定해야 할 것으로 要望된다.

정 직 과 성 실 로 서

신 퇴 하 는 사 회 이 록